



제안 설명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고령군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후
2025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으로 해당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출연의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152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른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2023년/34,967,966천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 되는 41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월 일

재무과장 배 영 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제출자	고령군수 (재무과장)
제출연월일	2024. .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제안이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령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금액 : 4,196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23년) 보통세(군세) 세입결산액(34,967,966천원)
×1.2/10,000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 오피스텔·건축물·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쟁송사무 지원 및 지방세 법령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라.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3. 출연금 심의요구서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관련사항 : 2025년도 세출예산 예산편성

출연금 심의요구서

<p>출연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p>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4,196천원(군비 4,196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2024년도</th> <th colspan="3">2025년도 예산안</th> <th rowspan="2">전년대비 증감액</th> </tr> <tr> <th>연구원 요구액</th> <th>부서 산정액</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출연금 (군비100%)</td> <td>4,086</td> <td>4,196</td> <td>4,196</td> <td>0</td> <td>110</td> </tr> </tbody> </table>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감	출연금 (군비100%)	4,086	4,196	4,196	0	110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감												
출연금 (군비100%)	4,086	4,196	4,196	0	110											
<p>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p>근거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p>지도감독 부서인건 (중 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p>첨부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 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26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24.8.31.기준)	○ 정원 88명 / 현원 71명 * 육아휴직 7명 포함						
	구 분	계	원 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등
	정 원	88명	1명	3명	56명	5명	23명
	현 원	71명	1명	3명	40명	4명	23명
총인원		97명 정원 외 인원 26명 (파견공무원13, 위촉연구·전문원8, 행정원등5)					
※ 연구직(40명) : 연구위원직 20명, 연구원직 12명, 조사분석직 8명							
임 원 (2024.8.31.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비 고	
	이 사 장	정 종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이 사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이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이 사	황 순 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 사	김 상 길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이 사	정 구 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이 사	신 동 현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이 사	서 동 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이 사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감 사	이 화 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감 사	김 경 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7,411 (‘11~’24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25,335
	예산액	12,805	18,069	17,379		부채	1,587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3,74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7,064				15,850		1,593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재무과	
연 락 처	(054) 950 - 6121